

부속서 9B
미래 조치에 대한 유보

제 1 절
주 해

1. 적절한 경우, 유보에 대하여 유엔통계국 통계책자 시리즈 엠 제77호 1991년 잠정중앙상품분류(유엔상품분류코드)에 규정된 잠정중앙상품분류를 참조한다.
2. 이 부속서는 제9.3조·제9.4조·제9.5조·제10.4조·제10.7조 및 제10.8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대하여 각 당사국이 취한 유보가 기재된다.
3. 유보가 적용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은 유보내용의 요소에 기재된다. 유보를 해석할 때에는 유보의 모든 요소들을 그 전체로서 고려한다.
4. 현지 주재 및 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현지 주재에 대하여만 불합치하는 조치는 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될 필요가 없다.
5. 부속서 9B에 열거된 불합치 조치가 중앙정부의 조치이고 이 협정 발효 후 지방정부에 위임된 경우, 그 지방정부는 그 후에는 위임된 분야에 관하여 유지하거나 채택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가졌던 것과 같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6. 서비스 무역과 관련된 유보와 약속은 1993년 9월 3일자 GATT 문서 MTN.GNS/W/164 및 1993년 11월 30일자 MTN.GNS/W/164 Add.1에 명시된 관련 지침과 함께 해석되어야 된다.
7. 각 유보는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일반분야를 말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가 이루어진 특정분야를 말한다.
 - 다. **산업분류**는, 적용 가능한 경우, 유엔상품분류코드 또는 국내산업분류코드에 따라 유보가 적용되는 활동을 말한다.
 - 라. **유보유형**은 유보가 이루어진 의무(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를 명시한다.

- 마. **현행조치**는, 오직 투명성의 목적상, 유보가 적용되는 분야·하위분야 또는 활동에 적용되는 불합치 조치와 관련된 기준 법률·규정·규칙·절차·결정·행정조치 또는 그 밖의 형태를 적시한다. 여기에 규정된 조치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다.

제2절
대한민국의 유보리스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제12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민, 입국 또는 일시주재를 포함한 자연인의 주재 또는 그 밖의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비거주자의 자본거래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유보내용	<u>투자</u>

비거주자는 다음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가) 거주자로부터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한도(원화차입의 경우 10억 원, 원화증권차입의 경우 50억 원)를 초과하여 원화를 차입하거나 원화표시증권을 차입하는 경우
- (나) 단기 원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또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거주자의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거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용되고 있지 아니한 파생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조치 외국외환거래법(법률 제6277호, 2000. 10. 23)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방위 산업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방위 산업 분야의 국경 간 서비스 및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방위산업체(「방위산업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기업)의 신주 외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법률 제7039호, 2003. 12. 31, 법률 제5559호, 1998. 9. 16)
-------------	---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투자

전기, 가스산업과 같이 기존의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에서 보유하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투자자나 제3국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설립된 기업이나 투자를 통제하는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유보의 목적상

(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유지되거나 채택된 것으로, 이전 또는 처분시점에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국적요건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실행중인 조치로 간주된다.

(나) 공기업은 소유지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오로지 기존의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이나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을 위해 만들어진 어떠한 기업도 포함한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유보내용	<u>투자</u>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가) 외국인·외국법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는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벌칙이 부과된다.
- (나) 국방, 문화재보호, 그리고 생태계/자연보호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처벌 가능하다.
- (다) 상속·경매 또는 계약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보내용

(라) 대한민국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법인 또는 단체가 국적을 바꾼 채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국적 변경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조치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5조, 제6조 (법률 제7167호, 2004.2.9)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정부권한 행사의 형태로 공급되는 민간부분 서비스의 전체 또는 부분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농업, 제조업 부수 서비스업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8 농림축산관련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3, 8847, 8854, 8855, 8856, 8857, 8852는 제외)
유보 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농업, 광업 및 제조업 부수 서비스업에 대한 국경 간 공급과 관련된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행조치 —

분야	총포·도검 및 화약류 등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의무,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총포·도검·화약류 분야에 영향을 줄 제도의 도입 및 유지에 관한 권한을 유보한다. 총포·도검·화약류의 제조, 사용, 판매, 저장, 운반, 수입, 수출 그리고 소지에 대하여 사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규제한다.

현행조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신용정보 서비스
산업분류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신용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사업 및 생산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2400 지불불능 및 법정관리 서비스
유보유형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조직, 운영하고자 하는 자 혹은 대한민국 안에서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인수, 정상화, 매각 등 투자사업을 영위하거나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운용,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의 특례 및 세법상 세제감면혜택 등을 받기 위하여는 납입자본금 70억 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로 등록하여야 한다.

CRC는 부실기업 인수 및 정상화 사업의 투자를 위하여 자체 계정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CR Fund”) 계정의 운용을 통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사 고유계정과 CR Fund 계정을 함께 운영하는 CR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본금 일정규모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CRC의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는 공개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산업발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법률 제 7092호, 2004. 1. 20)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2조(법률 제 6891호, 2003. 5. 29)
-------------	---

분야 사업서비스 및 건설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2 부동산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674 도시계획 및 조경
유엔상품분류 51* 건설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부동산 서비스(개발·공급, 관리, 매매·임대)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주택소유 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주거용 택지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시행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 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민관이 공동 설립한 법인만이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유보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무실을 구비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업자가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기준(기술 능력, 주택 건설실적 등)에 해당되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인정되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가 제한된다.

현행조치

임대주택법 제6조, 제14조, 제16조(법률 제6916호, 2003. 5. 29)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법률 제6916호, 2003. 5. 29)
주택법 제9조, 제12조(법률 제7159호, 2004. 1. 29)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그 밖의 사업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8442 인쇄·출판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지분제한, 영업과 경영제한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의 출판 또는 인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 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정기간행물의 발행 중 일부라도 외국자금의 출연을 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발행시, 외국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의 출연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대한민국의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나)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단체 또는 상기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인 법인 또는 법적 단체는 소속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만 그러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한 일간신문 또는 일반 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외국인·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가) 일간신문 : 100분의 30

(나) 일간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 100분의 50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대한민국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조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9조, 제15조(법률 제6905호, 2003. 5. 29)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대통령령 제18153호, 2003. 12. 3)

* 정기간행물이란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3. 5. 29)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그 밖의 간행물을 말한다.

분야 공동체, 개인 및 사회서비스
하부분야 노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52 노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방송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편성, 허가 및 주파수관리 등에 관한 조치와 대한민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대한민국으로부터 제공되는 국제방송역무를 포함하는 방송서비스*
	(나) 편방향 위성전송(DTH), 직접위성방송서비스(DBS), 데이터방송 및 DMB 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 등을 포함한 방송서비스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현행조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내지 제18조, 제37조, 제69조 내지 제78조 및 제86조(법률 제7213호, 2004. 3. 22)

* 방송서비스라 함은 모든 형태의 기획, 편성 또는 제작된 방송 프로그램으로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되는 것을 말한다.

분야	통신
하위분야	우편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511 우편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외국인에 의한 우편 서비스의 시행 및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제정(도입)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우편당국은 국내 및 국제 간 서신을 수집, 처리 및 배달하는 독점권을 갖는다(우편법 제2조).

아래의 상업적 서류와 관련한 민간우편업자의 서비스 제공은 이러한 유보로부터 배제된다(우편법 시행령 제3조).

- (가)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장 또는 송장
- (나) 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
- (다) 외국과 수발하는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
- (라) 외국과 수발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
- (마) 국내에서 회사(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국영우편업은 외국인의 투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는 제2항에서 언급된 서비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제4항(법률 제6643호, 2002. 1. 26)에 따른 산업자원부고시 제1999-58호).

대한민국우편당국은 우편금지제품의 결정권을 갖는다(우편법 제17조).

유보내용 대한민국 우편당국은 우편요금, 우표류의 발행권, 무료 및 감액 우편물 종류의 결정권을 갖는다(우편법 제19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현행조치 우편법 제2조(법률 제6196호, 2000. 1. 2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에 따른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58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4항(법률 제6643호, 2002. 1. 26)
우편법 제17조(법률 제6196호, 2000. 1. 21)
우편법 제19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법률 제6196호, 2000. 1. 21)

분야	유통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621(유엔상품분류 62111 제외) 중개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622 도매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미가공 농산물, 산 동물, 식음료의 중개업 및 곡물, 육류, 가금, 곡분, 홍삼, 비료 도매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현행조치	-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21 초등교육, 유엔상품분류 922 중등교육, 유엔상품분류 923 고등교육, 유엔상품분류 924 성인교육, 유엔상품분류 925 그 밖의 교육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p>대한민국은 초·중·고등교육, 의료·보건관련 및 학위수여 성인교육, 방송을 통한 성인교육, 정부의 지원 혹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직업훈련 및 그 밖의 교육의 국경 간 공급형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대한민국은 초·중학교 학생의 해외유학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대한민국은 초·중등교육기관,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 대학,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기관 및 성인교육기관, 학위수여 성인교육기관, 방송을 통한 성인교육기관,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평생교육시설, 정부의 지원 혹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 및 그 밖의 교육기관(언어교육 제외)의 설립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대한민국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성인교육, 기술 및 직업훈련교육, 그 밖의 교육·훈련분야에서 교원 및 보조인력을 포함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현행조치	사립학교법 제3조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6조
-------------	---

분야	전력 산업
하위분야	원자력 발전을 제외한 발전 전력 송전, 배전 및 판매 전기 사업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전력설비의 점검·검사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7100 전력에너지 유엔상품분류 5164 전기사업 유엔상품분류 5165 절연관련 사업 유엔상품분류 52243 전력선관련 사업 유엔상품분류 87909 그 밖의 사업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700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부수적인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전력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외국투자자는 한국전력 주식의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외국인투자는 총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만 허가된다.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외국투자자는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포함한 전력산업의 운영이 금지된다.

대한민국은 인접국가와의 송전, 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외국인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자본금, 기술인력의 수, 필요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전기설비 점검·검사 업무를 실시할 수 없다.

현행조칙

증권거래법 제203조(No 7114, 2004.1.29)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7조의2(No 18146, 2003.11.29)

전기사업법 제7조, 제73조의5, 제78조(No 6656, 2002.2.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5조(No 7039, 2003.12.3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5조(No 18222, 2004. 1.13)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5조(No 02-115, 2002.11.26)

분야	환경서비스
하위분야	음용수 처리·공급서비스 중수도서비스 생활폐수처리서비스(산업폐수 제외) 생활폐기물처리서비스(산업폐기물 제외) 위생 및 유사서비스 토양·지하수 오염 저감 및 복원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서비스(환경영향평가서비스 제외) 신규환경서비스(대기오염물 측정 및 저감, 수질오염물 측정, 폐수처리,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소음진동 측정 및 저감, 환경영향 평가 제외)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8000 자연수 유엔상품분류 71390 그 밖의 물질의 파이프 이송(원유 및 천연가스 제외) 유엔상품분류 94010* 하수처리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4020* 폐기물 처리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4030 위생 및 유사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4060*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4090*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하위분야 및 산업분류에 기재된 환경서비스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유엔상품분류 94010* : 산업폐수 수집 및 처리서비스는 제외한다.

유엔상품분류 94020* : 산업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서비스는 제외한다.

유엔상품분류 94060* & 94090* : 환경영향평가서비스는 제외한다.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어업관련활동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82 어업관련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조업활동을 통제할 권리를 갖는다.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조업을 위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대한민국에서 조업활동을 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투자하고, 관련 법인 또는 국민에 대한 투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의결권이 50% 이상일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국 내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안의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유보내용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된 어업활동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어획량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시험연구 또는 교육실습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2. 어업에 관련된 탐색·집어
3. 어획물의 보관·저장·가공
4.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운반

현행조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법률 제5809호, 1999. 1. 5)
수산업법 제5조(법률 제5977호, 1999. 4. 15)

분야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하위분야	투기 및 도박서비스
산업분류	상품분류코드 9652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시설 운영서비스 상품분류코드 96492 투기 및 도박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무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도박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 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카지노에 입장하게 하는 카지노 사업을 할 수 없다.

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카지노사업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이의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경륜·경정사업에 있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공단을 제외하고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알선·양도 등과 관련한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 대하여 금전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농림부장관의 허가로 소싸움 시설을 운영하는 인은 대한민국에서 소싸움 운영(승자독식 도박운영)에 대한 권리가 배타적으로 부여된다.

대한민국 경주협회는 경마운영(승자독식 도박 운영) 권리가 배타적으로 부여된다.

- 현행조치**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법률 제 7186호, 2000. 12. 29)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법률 제18108호, 2003. 9. 29)
관광진흥법 제20조, 제27조(법률 제6841호, 2002. 12. 3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대통령령 제18082호, 2003. 8. 6)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법률 제 7159호, 2004. 1. 2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2조의8, 제42조의9, 제42조의10(대통령령 제16918호, 2000. 7. 27)
경륜·경정법 제4조, 제16조, 제21조(법률 제7133호, 2004. 1. 29)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0조(대통령령 제16681호, 1999. 12. 31)
전통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법률 제6722호, 2002. 8. 26)
한국마사회법 제3조, 제48조(법률 제6572호, 2001. 12. 31)

분야	가스 산업
하위분야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2020 액화천연가스, 천연가스 유엔상품분류 52241 장거리배관망 유엔상품분류 61300 석유제품을 제외(LPG 제외)한 자동차 연료 소매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62271 고체, 액체, 가스 연료 및 관련 생신품의 도매 교역서비스 유엔상품분류 63297 연료석유, 가스용기, 석탄, 목재 소매 유엔상품분류 71122 액체, 가스류 운송 유엔상품분류 71232 액체, 가스류 운송 유엔상품분류 71310 석유, 천연가스의 운송 유엔상품분류 72222 액체, 가스류 운송 유엔상품분류 74220 액체, 가스류의 저장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700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부수적인 서비스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유보유형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가스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도입, 도매, 전국 주배관망의 운영 등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

가스수송, 도입 및 도매를 포함한 가스분야의 민영화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한국가스공사의 주식은 외국인 각1인에 대하여는 발행주식총수의 15%, 전체 외국인 주식보유는 발행주식총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국경 간 서비스 교역도 이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유보내용

도시가스회사들은 최종소비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고압가스제조·충전·저장·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고압가스제조·충전·저장·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외국 고압가스제조사업자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제조능력 이상을 저장하는 자는 자기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사업, 액화석유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 및 도시가스시설을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가스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 제조시설 및 도시가스시설 중 설치 후 일정기간(15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검진 또는 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진 또는 진단을 받아야 한다.

유보내용

제조된 고압가스 용기·냉동기·특정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사전에 등록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는 외국인은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스연소기·기기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판매하기 전에 허가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신고관청에 고압가스사용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압가스·LP가스·도시가스를 국내에서 운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압가스 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 및 **도시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외국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압가스시설·액화석유가스시설 및 **도시가스시설**을 국내에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가스시설 및 가스제품에 대한 검사 또는 재검사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가스수송, 도입 및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현행조치	<p>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6863호, 2002. 11. 07, No 6863)</p> <p>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법률 제 6841호, 2002. 12. 30)</p>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 제13-2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법률 제 6676호, 2002. 3. 25)</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제14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31조, 제33조(법률 제6976호, 2003. 9. 29)</p> <p>도시가스사업법 제1조, 제3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16-2조, 제16조의 3조, 제17조, 제17조의 2조, 제18조의 4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5조, 제43조(법률 제6916호, 2003. 5. 27)</p> <p>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2000. 3. 30)</p> <p>석유사업법 제8조(법률 제6627호, 2004. 3. 2)</p>

분야	취약집단의 처우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이행 요건, 현지 주재,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취약집단에게 권리 또는 특혜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원자력 산업
하위분야	원자력발전 핵연료의 생산과 공급 방사성 폐기물 처리·처분 원자력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3000 우라늄, 토리움 광물 및 농축물 유엔상품분류 33710 원자로에 사용되는 연료요소(카트리지, 방사선비조사) 유엔상품분류 33720 원자로의 사용 후 핵연료 요소(카트리지, 방사선조사) 유엔상품분류 42310 원자로 유엔상품분류 88150 수수료나 계약에 따른 코크스·석유정제제품 및 원자력연료의 제조 유엔상품분류 88450 핵연료 제조 관련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4900 그 밖의 환경 보호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조치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외국 투자자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원자력연료의 제조와 공급,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업,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같은 원자력발전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외국인은 원자력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건설, 운영 또는 품질검사 서비스는 과학기술부의 감독 하에 관리된다.

원자로가 장착된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 항구에 출입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원자력에너지와 관련된 서비스는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의 통지, 등록, 허가, 감독을 받아야 한다.

현행조치

전기사업법 제12조(법률 제7018호, 2004. 3. 1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7039호, 2003. 1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법률 제18222호, 2004. 1. 13)

외국인 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5조(법률 제2002-115호, 2002. 11. 26)

원자력법 제11조, 제21조, 제33조, 제34조, 제43조, 제57조, 제64조, 제76조, 제86조, 제90조의4(법률 제6873호, 2003. 5. 15)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전문직서비스(법률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61 법무서비스(1997. 2. 국제연합 통계위원회에 가승인한 개정 상품분류 하위 중재 및 조정 포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법률서비스 분야에 있어 소유, 동업, 제공할 서비스의 범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법」 또는 「법무사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개업하고자 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명되며,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개업하고자 하는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현행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 21조, 제34조, 제109조(법률 제6207호, 2000. 1. 28.) 법무사법 제4조, 제7조, 제14조(법률 제6860호, 2003. 3. 12.) 공증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법률 제5590호, 1998. 12. 28.)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13 강제적 사회보장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3 보건 및 사회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시장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공공 목적으로 이 분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하여야 한다.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면허가 발급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일방 당사국 영역 내로부터 타방 당사국 영역 내로의 의료 서비스 공급은 상기 언급한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서만 허용되며 이는 의료지식 또는 의료기술지원에 한정된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만 운영되어야 한다.
	의료인과 약사는 각 1인 1개소의 의료기관,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현행조치	의료법 제1조, 제2조, 제30조, 제30조의 2, 제44조(법률 제7148호 2004. 1. 29)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대통령령 제18084호) 약사법 제19조(법률 제7148호, 2004. 1. 29)

분야	무역서비스
하위분야	유통서비스, 위탁서비스, 도·소매서비스, 프랜차이즈업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의 공급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수입금지 또는 제한과 관련된 조치 및 법령과 여타 조치에 규정된 물품의 목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관세법 제226조 및 제234조(법률 제 7009호, 2003. 12. 30)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육상운송 서비스 및 관련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11 철로에 의한 운송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12 육상운송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4 지원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8868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유엔상품분류 83102 운영자 없는 물품운송 차량의 대여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육상운송(여객·화물) 및 운송지원·부수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도로 – 여객>

도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을 포함한 그 밖의 여러 요건에 기초하여 발급된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운송 서비스의 경우 면허를 발급한 행정청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영업하여야 한다.

운임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여야 한다.

유보내용

<도로 - 화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사업소가 위치한 시·도지사(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영업지역이 주사무소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철도 - 여객 및 화물>

철도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면허 발급결정은 국가산업개발 및 경제발전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한 기준에 의하여 내려진다.

국유철도 운송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철도청이 운영한다.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한정한다.

고속철도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다.

철도관련시설(고속철도 포함)의 건설 및 유지·보수 업무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수행한다. 철도시설관리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유보내용 (라) (가) 내지 (다)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도로 - 운송주선>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규모의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고 관계 법령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철도 - 운송주선>

철도소운송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시설물을 확보한 후 철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행조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법률 제6942호, 2003. 7. 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 21조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철도법 제5조 (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사설철도및 전용철도면허규정 제3조(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법률 제17194호, 2001. 4. 9)
공공철도건설 촉진법 제2조의3(법률 제6956호, 2003. 7. 29)
고속철도건설 촉진법 제4조 (법률 제6956호, 2003. 7. 29)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법률 제6956호, 2003. 7. 2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법률 제6956호, 2003. 7. 29)
철도소운송업법 제3조(법률 제6364호, 2001. 1. 16)

분야	운송
하위분야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22 내륙주운 유엔상품분류 733 우주운송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내륙주운 및 우주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	---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농어축산 관리업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742 저장관리 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양곡관리 서비스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곡물관리법 (법률 제6836호, 2002. 12. 30)

분야 국가전자·정보체계
* 국가지리정보체계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시장 접근,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지리정보체계 및 동 체계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대한민국은 정부소유의 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전자·정보 체계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설치될 수 있는 모든 국가전자·정보체계에도 적용된다.

현행조치 —

제 3 절 싱가포르의 유보리스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u>

싱가포르는 제12장(기업인의 일시입국)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민, 입국 또는 일시주재를 포함한 자연인의 주재 또는 그 밖의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	---

분야	-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공항의 관리 및 운영 권한의 매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한을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정부 소유 또는 정부 통제 하의 의료기관(동 기관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공되는 보건 서비스, 사회 안전 및 공공 훈련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다음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정부권한행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민간 서비스 부문의 전부 또는 부분 양도
	(나) 싱가포르 정부가 전부 소유한 기업 또는 자산 및/또는 자본이자의 양도. 그리고
	(다) 싱가포르 정부가 일부 소유한 기업 또는 자산 및/또는 자본이자의 양도
현행조치	–

분야	국가전자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싱가포르는 정부 소유의 정보 또는 정부의 규제기능 및 권한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수록한 모든 국가전자·정보 체계의 관리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러한 조치는 트레이드네트 및 마리넷과 같이 현재 운영 중인 국가전자·정보체계 및 향후 설치될 모든 국가전자·정보체계에도 적용된다.

현행조치

-

분야	무기 및 폭발물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무기 및 폭발물 분야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무기나 폭발물의 소유, 수출, 수입, 운송, 보관, 판매, 사용, 제조는 중대한 안전보장을 이유로 규제된다.
현행조치	무기 및 폭발물법 제13장(1985년 개정)

분야 방송서비스

방송서비스는 해당 편성에 대하여 선택할 권리가 없는 제작물 소비자를 위하여 시청각 수신을 목적으로 한 제작물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일련의 문예, 예술 작품 편성을 의미한다.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방송서비스와 관련된 연속성 있는 전파배분과 싱가포르로부터 이루어지는 국제방송서비스 및 싱가포르 국내 시청자들에 의하여 수신되는 방송서비스에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동 유보는 최종 소비자에게 인가 방송서비스를 전송하는 활동에만 한정되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행조치 —

분야	사업서비스 신용정보보고 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신용정보보고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상담 서비스, 부동산 대행 서비스, 부동산 경매 서비스,
부동산 평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2 부동산 서비스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초한 주거/비주거 부동산의 관리 서비스,
부동산 상담 서비스, 부동산 대행 서비스, 부동산 경매 서비스,
부동산 평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싱가포르는 부동산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떠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유지할 권한을 유보한다. 이는 부동산 소유권, 판매,
구입, 개발, 관리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본 유보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초한 주거/비주거 부동산 관리
서비스, 부동산 상담 서비스, 부동산 대행 서비스, 부동산 경매
서비스, 부동산 평가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현행조치
거주부동산법 제274장(1985년 개정)
국유토지법 제314장(1996년 개정)
주택 및 개발법 제129장(1997년 개정)
주룡타운회사법 제150장(1998년 개정)
공동주택계획집행법 제99A장(1997년 개정)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무장 호위 및 장갑차량 서비스, 무장경호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87305 경호서비스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무장 호송, 장갑차량 및 무장경호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경찰법 제9관, 235장(1985년 개정)

분야	사업서비스
하위분야	투기 및 도박 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투기 및 도박 서비스 콩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도박법 제21조(1985년 개정) 공공도박장법 제49조(1985년 개정) 개인복권법 제250조

분야	사업-전문직 서비스(법률 서비스)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내 법률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공동체, 개인 및 사회서비스
하부분야	노동조합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52 노동조합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주재, 이행 의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대한민국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노동조합법, 제333장(1985년 개정)

분야 방위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기술 엔지니어링 및 또는 이의 승계기관에 대한 싱가포르 정부의 이익 제한권 보유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동 권한은 싱가포르 안전보장을 위한 이사회 구성원들의 지정 및 파면, 지분의 회수 그리고 회사의 해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현행조치 —

분야	신문의 배급, 발행 및 인쇄
	신문이란 인쇄된 언어에 관계없이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유료 또는 무료배포를 위하여 발행된 뉴스, 정보, 사건기사, 또는 공공의 관심이 되는 사안과 관련되는 논평, 기록 또는 비평을 담고 있는 모든 유형의 출판물을 말한다.
하위분야	-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지분제한과 경영제한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신문의 출판 또는 인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싱가포르 국내·외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배급은 싱가포르 법에 따른다.
현행조치	신문 및 인쇄언론법, 제206조(1991년 개정)

분야	무역서비스
하위분야	유통서비스 위임위탁서비스 도매무역서비스 소매서비스 프랜차이징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수입금지 또는 비자동적 수입허가와 관련된 생산품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수입금지 또는 비자동적 수입 허가제도를 관광하는 법, 규정 또는 다른 조치에 규정된 품목의 목록을 변경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교육서비스
하위분야	초등교육서비스 중등교육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21 초등교육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2210 전기 중등교육서비스 유엔상품분류 92220 후기 중등교육서비스(싱가포르 교육제도 하의 전문대학과 예비대학에 한함)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민을 위한 초등교육, 전기 중등교육, 후기 중등교육(싱가포르 교육제도 하의 전문대학과 예비대학에 한함)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교육법 제87장(1985년 개정) 행정지침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의료서비스 약국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312 의료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 및 약사의 숫자에 대한 어떠한 제한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보건 관련 전문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내국민 대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콘택트렌즈사,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조산사 및 전통 중의약사와 같은 보건 관련 전문인의 허가, 등록 및 자격 인정을 목적으로 교육 및 전문자격 인정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p>콘택트렌즈사법 제53A조</p> <p>치과의사법 제76조</p> <p>의료등록법 제174조</p> <p>간호사 및 조산사법 제209조</p> <p>약사등록법 제230조</p> <p>전통중의약사법, 2000년 법률 제34호</p>

분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위생 및 그 밖의 환경보호 서비스
하위분야	폐수처리 관리(고형 폐기물과 폐수의 수집, 폐기 및 처리를 포함 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401 폐수 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 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폐수의 수집, 처리 및 폐기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 지 아니하는 폐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 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하수 및 위생업 실행법 하수·배수법 제294조 (2001년 개정)

분야	보건 및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사회서비스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933 사회서비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우편 및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우편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우편회사의 편지 및 엽서를 전달하고 우편 및 엽서의 접수·수집·발송·운송·배달하는 모든 부수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배타적 권리를 포함하여, 우편서비스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우편서비스법 제237A조

분야	우편 및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우편서비스–속달우편 쿠리어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속달우편 및 쿠리어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주는 타방 당사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대우를 타방 당사국의 인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우편법 제237A장

분야 통신서비스

하위분야 통신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유보내용 투자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이 현행조치에 대한 유보에서 자국의 시설 기반 기본통신서비스에 설정한 것과 같은 한도로, 싱가포르 시설 기반 기본통신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할 권리를 유보 한다.

현행조치 -

분야	무역서비스
하위분야	사람이 소비하는 식수 공급
산업분류	유엔상품분류 18000 천연수 위 기재된 분야들은 식수공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음용 식수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공공시설법 제261장(1996년 개정), 공공시설법 2001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항공 운송 서비스 – 컴퓨터 예약 시스템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컴퓨터 예약 시스템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p>육상 운송 서비스 - 공공운송서비스(철도 여객운송 서비스, 도시 및 도시외곽지역의 정기 운송 서비스, 택시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공공운송 서비스와 관련된 버스 터미널 및 철도 역사 서비스와 발권서비스</p> <p>공공운송서비스란 싱가포르 내 이동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며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지칭한다.</p>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p><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p> <p>싱가포르는 공공 운송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공공운송서비스란 싱가포르 내 이동을 목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며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지칭한다.</p>
현행조치	<p>신속통행체계법 제263A장</p> <p>싱가포르 육상운송청법 제158A장 (1996년 개정)</p> <p>공공운송위원회법 제259B장 (2000년 개정)</p>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육상 운송 서비스 - 철도 화물 운송, 철도운송 지원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위에 규정한 육상운송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p>육상 운송 서비스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되는 부수 서비스</p>
산업분류	<p>유엔상품분류 742 보관 및 창고 서비스 유엔상품분류 748 화물운송대행 서비스 (항공화물운송주선 제외) 유엔상품분류 749 그 밖의 운송지원 및 부수 서비스</p>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인에 의한 보관 및 창고업, 화물운송주선(항공화물운송 주선 제외), 내륙 트럭운송, 컨테이너 정거장 및 저장소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타방 당사국이 채택 또는 유지하는 조치와 상응하는 대우를 타방 당사국 인에게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해상운송서비스 – 예선보조, 선용품공급, 연료급유 및 급수,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처리, 항만 선석 배정 서비스, 항행보조, 긴급수리시설, 정박 및 그 밖의 통신, 급수 및 전력공급을 포함하여 선박운항에 필요한 육상 운항 서비스
산업분류	–
유보유형	시장 접근, 내국민 대우, 현지 주재, 이행 요건, 고위 경영자 및 이사회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 교역 및 투자</u> 싱가포르는 예선보조, 선용품 공급, 연료급유 및 급수,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처리, 항만 선석 배정, 항행 보조, 긴급 수리 시설, 정박 및 통신, 급수, 전력 공급을 포함하여 선박운항에 필요한 그 밖의 육상 운항 서비스의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현행조치	싱가포르 해운항만청법, 제41절(VIII부), 제170A조